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98. 3. 1.
- 개정 : 2000. 3. 1.
- 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7. 12. 28.
- 개정 : 2019. 0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운학원 정관 제43조 제5항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기준)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의는 <별자>의 각 호 사항을 심사한다.

제6조(심사자료) ① 정년보장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사립학교 교·직원 인사기록카드
2. 연구실적 심사조서
3.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 평정표
4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② 총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년보장 임용대상) 수원과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

3-0-21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위원회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수
2.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수

제8조(정년보장 임용 제외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당연 면직 해당자

제9조(연구실적물 심사) 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다.

제10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결과 보고)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

제1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

<별 지>

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평정표

피평정자	학 과	현 직 급	현직급임용일
	성 명	최초임용일	생년월일 (세)
평 정 영 역	평 정 항 목		적 합 부 적 합
1. 전임교원 업적 평 가 점 수	년 : 년 : 년 : 년 : 평균()		
2. 교 육 활 동 (강 의)	가. 교수(강의) 능력 나. 수업효과 다. 학습자료 활용도 라. 적절한 성적평가		
3. 연 구 활 동	가. 연구실적 나. 연구능력 다. 학문 연구에 대한 발전성 라. 국내외 학술활동		
4. 봉 사 활 동	가. 학생지도에 대한 노력과 실적 나.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. 학내외 행사 참여도 라. 취업, 현장실습에 대한 공헌도		
5. 교육관계 법령 준 수	가. 근무자세 나. 강의사항 다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		
6. 교수로서의 품 위	가. 교직에 대한 사명감 나.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의 다. 개인생활의 참령도		
7. 기 타 사 항	가. 본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. 교내 및 학과내의 인화관계 다. 건강상태		
포 상	징 계	종합의견	

상기와 같이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·심의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원 장 : (인)
 위 원 : (인)
 위 원 : (인)
 위 원 : (인)
 위 원 : (인)

수 원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